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      |
|------------|------|
| 의 안<br>번 호 | 3042 |
|------------|------|

2025. 9. 1.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25. 8. 11. 서울특별시시장 제출(2025. 8. 14. 회부)

### 2. 제안이유

-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시설의 이용 및 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5조)
- 관리·운영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8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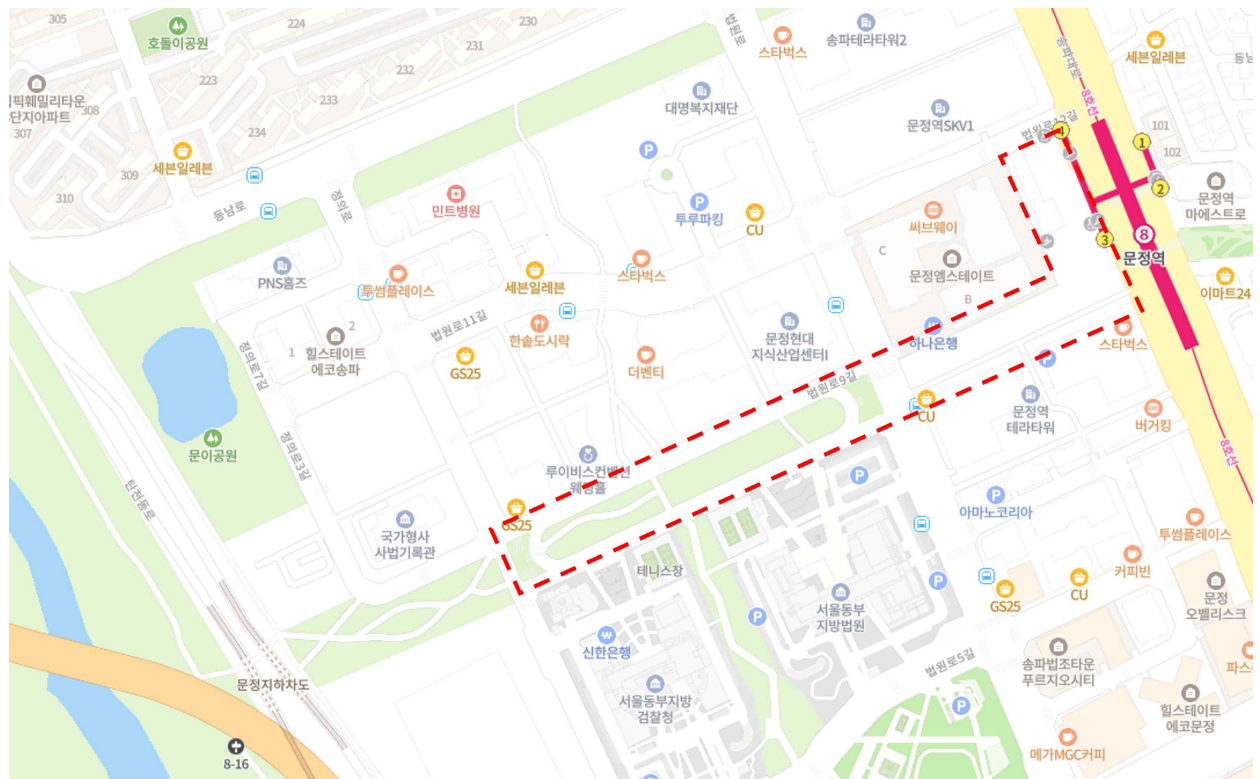
-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조성되어 유휴공간으로 존치되어온 문정역 광장(문정컬처밸리)을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으로 조성하고,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 광장조성 개요

- ‘문정컬처밸리’는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송파구 문정동 222-5 일대)(붙임 2 참고)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총 조성면적은 18,772㎡이며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연계 조성되었음.

##### <문정역 광장>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222-5번지 일월
- 면 적 : 18,772㎡
- 시설현황 : 도시계획시설 광장(일부 도로 중복결정 1,718㎡)  
(종합안내소, 휴게실, 주차장(30대), 화장실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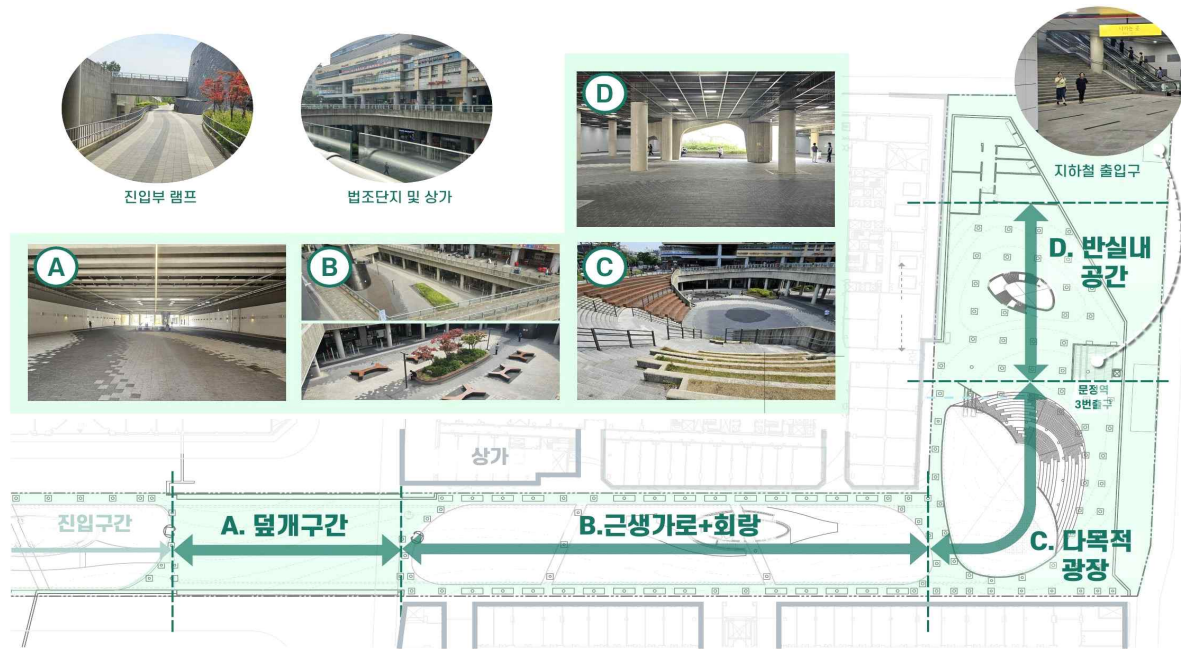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 광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세분 | 위치           | 면적(㎡)    |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                                              |
| -  | ①          | 광장  | 근린<br>광장  | 문정동<br>643일원 | 18,772.3 | -   | -   | 18,772.3 | 서울시고시<br>제2009-218호<br>(’09.05.28) | 중로 2-5호선<br>중복결정<br>(면적:1,718㎡)<br>3공구 (미준공) |

### <문정역 광장 조성현황>



- 이 광장은 지난 2007년 6월 구역지정 후 현재까지 조성공사를 시행<sup>1)</sup> (사업시행자 : SH공사) 중인 ‘문정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8일 준공되었으며, 이후 개폐식 지붕구조물 설치 및 시민청 조성방안 등이 검토되어왔으나, 최근까지 뚜렷한 공간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었음.

- 지난 2023년 1월 4일 서울시장의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같은 해 6월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수립되었

1) 문정컬처밸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공공지원시설 외에 문정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부분 준공된 상태임.

고, 이후 2024년 9월 문정컬처밸리를 생활체육시설과 스포츠 체험 공간, 도시정원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스포츠가든 문정역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현재 SH공사에서는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조성을 위해 ‘문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2025.5.29., 송파구청) 및 광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조성공사비 약 27.7억원)에 있으며, 향후 공사준공 이후 서울시로 광장을 인계인수<sup>2)</sup>(SH공사→서울시)할 예정임.<sup>3)</sup>

## (2) 조례안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충칙 3개조, ▲시설의 사용 등 9개조, ▲시설의 이용 3개조, ▲운영의 위탁 4개조로 총 19개조문으로 구성됨.

### 가. 광장의 명칭(제명 및 안 제2조)

- 먼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명칭에는 ‘스포츠 가든(Sports Garden)’

2) 문정역 유희공간 혁신프로젝트 시행 협약서(2023.10.31.)

3)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추진경위

- 2007. 06. 28.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 2009. 05. 28.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2017. 11. 18. 문정 컬처밸리 조성공사 완료
- 2023. 01. 04.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발표(서울시장)
- 2023. 06. 15. 문정역 유희공간 혁신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2023. 10. 31. 문정역 유희공간 혁신프로젝트 시행 협약 체결(관광체육국-SH공사)  
(SH공사에서 모든 사업비 및 설계·공사비를 부담, 준공 후 문정컬처밸리 기부채납)
- 2024. 09. 05. 기본계획(안) 확정(당초 복합스포츠문화공간 → 스포츠가든)  
(관리청 변경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 → 미래공간기획관(도시활력담당관))
- 2024. 11. 2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2025. 05. 29.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SH공사 → 송파구청)
- 2025. 07. 14. ‘문정스포츠가든 조성공사’(추정가격 : 약 27.7억원)를 공고
- 2025. 08. 14. 계약체결 및 착공(공사기간 2025.08.14. ~ 2026.04.21.)

이라는 영문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용어는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표현이기는 하나,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3조 및 제13조(붙임 1 참고)에 따라 공문서 등에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용어는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외국어 병기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미래공간기획관(도시활력담당관)은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sup>4)</sup>를 받은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반영하고자 ‘편 스테이션’ 및 ‘러너·핏·스마트무브 스테이션’, ‘런 베이스’와 같은 정책·사업명에 대한 시민 친화적 한글 명칭을 개발하고, 디자인 체계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위해 용역<sup>5)</sup>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정책사업 명칭의 한글전환이 필요해 보임.

## 나.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안 제4조 및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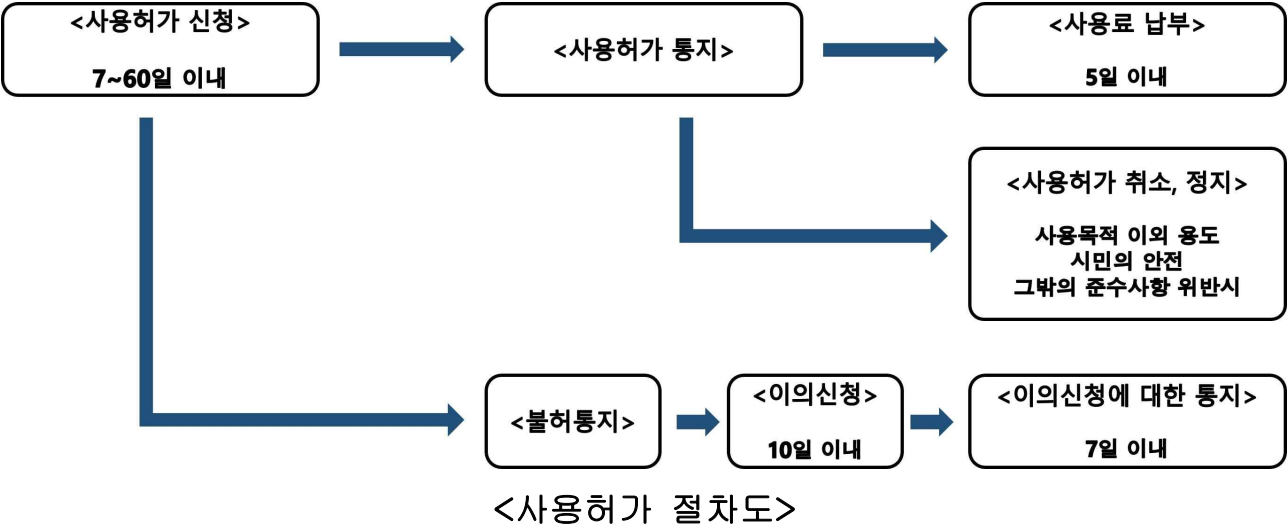
- 광장의 사용신청은 사용일의 60일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일이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

4)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스테이션”, “러너스테이션” 등의 안내표기와 사업명에 대한 공공언어 개선을 권고한 점을 감안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2829(2025.7.14.), “서울시 정책명, 공공시설물 명칭 사용 관련 공공언어 개선 권고”

5) 도시활력담당관-6285(2025.7.30.), “편 스테이션 공간브랜딩 안내시설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추진 계획”

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인 경우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음.



- 서울시 내 광장별 사용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익목적 또는 지자체 행사, 문화·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 등 관련행사 등이 공통적이 나, ‘마곡광장’의 경우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나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6)</sup>

**<광장별 우선사용순위 세부사항>**

| 광장명  | 우선사용순위                                                                                                                                                                                                  |
|------|---------------------------------------------------------------------------------------------------------------------------------------------------------------------------------------------------------|
| 세운광장 | <p>「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li> <li>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li> <li>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li> </ol> |

6) ‘서울광장’은 열린광장이라는 조성취지를 반영하여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광장명               | 우선사용순위                                                                                                                                                                                                   |
|-------------------|----------------------------------------------------------------------------------------------------------------------------------------------------------------------------------------------------------|
| 광화문광장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br>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br>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br>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
| 서울광장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br>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br>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br>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br>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br>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
| 마곡광장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br>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br>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br>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br>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br>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
| 문정<br>스포츠가든<br>광장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br>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br>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br>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

- 이에,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도 조성취지를 감안한다면 체육관련 행사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광장의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 정 안                   | 수 정 안 (예시)                   |
|-------------------------|------------------------------|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생략)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제정안과 같음) |
| ② 사용일이 같은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                      |

| 제 정 안                                                                                                                     | 수 정 안 (예시)                                                                                                                |
|---------------------------------------------------------------------------------------------------------------------------|---------------------------------------------------------------------------------------------------------------------------|
| <p>에는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u>&lt;신설&gt;</u></p> <p>3. (생략)</p> | <p>-----</p> <p>-----</p> <p>-----.</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u>3.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u></p> <p>4. (제정안과 같음)</p> |

#### 다. 사용료 및 이용료(안 제10조 및 제13조)

○ 서울시는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장소사용자와 프로그램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고, 안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각각에 대해 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에 조성될 예정인 체육시설(다목적 코트, 배드민턴 코트, 탁구대, 피트니스, GX룸)에 대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이 조항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른 광장(세운·광화문·서울·마곡)의 사용·관리 조례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인데,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할 때 요청시기에 따라 사용료 반환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장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sup>7)</sup>

##### <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전액 반환
- 5일 전까지 취소 시 : 10분의 9
- 1일 전까지 취소 시 : 10분의 7
- 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7) 다만,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향후 광장 및 체육시설의 이용 추이를 살펴보고 사용료 반환비율의 증감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3에서는 체육 및 조경시설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1인 1회당 2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해서 이용료를 20~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감면비율의 차등 적용 시 감면대상별 적정 감면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을 마련하는 등 사용자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라. 위탁운영(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조성 후 광장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난 2025년 2월 수립한 “문정역 스포츠가든 광장 사업 추진계획”<sup>8)</sup> 상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광장을 관리·운영할 계획임을 알 수 있는데, 민간위탁 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서울시가 직접 광장을 운영하는 방안<sup>9)</sup>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관리·운영 방안<sup>10)</sup>에 대한 장·단점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8) 도시활력담당관-1243(2025.2.14.)

## 마.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조성 후 오랜기간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문정컬처밸리’를 다목적 운동공간과 도시정원으로 구성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으로 조성한 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가든’이라는 외국어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말을 사용한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광장의 특성 및 조성배경 등을 감안하여 광장사용의 중복신청시 우선순위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광장의 운영은 민간위탁만이 아닌 직접 운영방식과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광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조례로 광장의 사용 및 관리 근거를 두고 있는 광장은 현재 총 5개소로, 세운광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마곡광장, 서울역광장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서울역광장을 제외하면 총 4개소가 서울시 소유의 광장임.
- 현재 서울시 소유광장의 관리·운영은 개별 실·본부·국<sup>9)</sup>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광장의 조성부서이거나, 개발부서, 재산관리관 등과 연계된 것이나, 시민의 이용편의, 공간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

9) 세운광장, 광화문광장 : 균형발전본부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 행정국  
마곡광장 : 경제실

서울시 소유의 광장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향후에는 유휴공간의 발굴 및 개발 외에도 기존 광장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콘텐츠 개발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              |
|-----------------|-----|--------------|
| 의 안 심 사 지 원 팀 장 | 강대만 | 02-2180-8204 |
| 입 법 조 사 관       | 한승윤 | 02-2180-8207 |

[붙임1] 관계법령(p12)

[붙임2] 문정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p14)

[붙임3]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세운광장·마곡광장 운영현황(p15)

## [붙임 1]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3조(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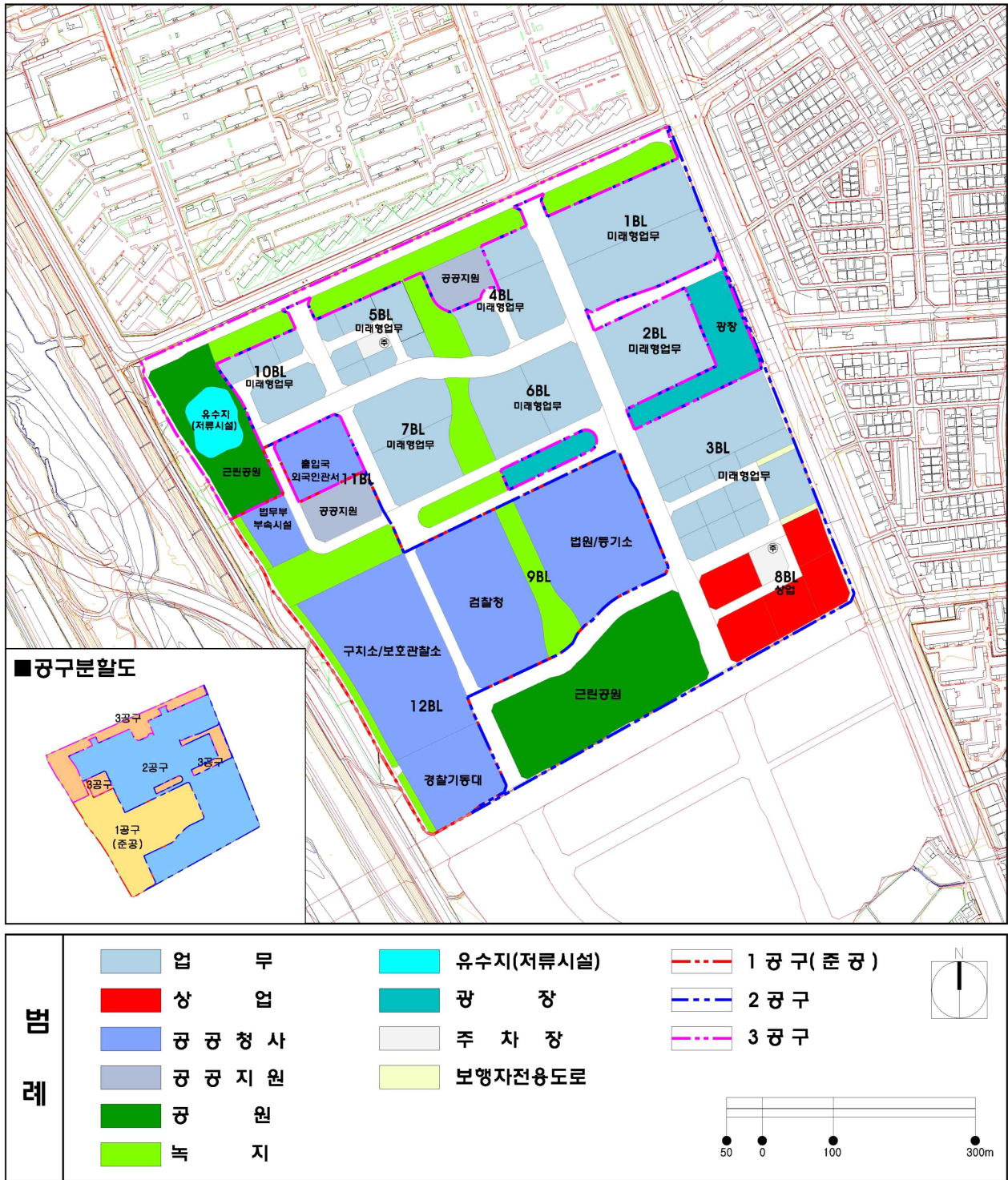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붙임 2] 문정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 [붙임 3]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세운광장·마곡광장 운영현황(※ 서울역광장은 국가 소유로 제외)

| 광장명  | 서울광장                                                                                                                                                                              | 광화문광장                                                                                                                                                                                                                                                 | 세운광장                                                                                                                                                                                                                             | 마곡광장                                                                                                                                                                                                                                  |
|------|-----------------------------------------------------------------------------------------------------------------------------------------------------------------------------------|-------------------------------------------------------------------------------------------------------------------------------------------------------------------------------------------------------------------------------------------------------|----------------------------------------------------------------------------------------------------------------------------------------------------------------------------------------------------------------------------------|---------------------------------------------------------------------------------------------------------------------------------------------------------------------------------------------------------------------------------------|
| 근 거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조성목적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장소 제공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장소 제공                                                                                                                                                                                                  |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
| 최초개장 | 2004.5.1.                                                                                                                                                                         | 2009.8.1.                                                                                                                                                                                                                                             | 2017.9.19.                                                                                                                                                                                                                       | 2019.4.29.                                                                                                                                                                                                                            |
| 광장면적 | 13,207㎡                                                                                                                                                                           | 약 40,300㎡                                                                                                                                                                                                                                             | 약 3,700㎡                                                                                                                                                                                                                         | 12,985㎡                                                                                                                                                                                                                               |
| 사 진  |  <p>출처 : 서울광장 홈페이지<br/>(<a href="https://plaza.seoul.go.kr/">https://plaza.seoul.go.kr/</a>)</p> |  <p>출처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br/>(<a href="https://gwanghwamun.seoul.go.kr/ghm/contents/11.do?mid=1069">https://gwanghwamun.seoul.go.kr/ghm/contents/11.do?mid=1069</a>)</p> |  <p>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내손안에서울)<br/>(<a href="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7643">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7643</a>)</p> |  <p>출처 : 마곡산업단지 홈페이지<br/>(<a href="https://magoksandan.kr/pages/facility/square_01.do">https://magoksandan.kr/pages/facility/square_01.do</a>)</p> |
| 담당부서 | 행정국 총무과                                                                                                                                                                           |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경제실 산업입지과                                                                                                                                                                                                                             |
| 총사업비 | 39.54억원                                                                                                                                                                           | 888억원                                                                                                                                                                                                                                                 | 473억원                                                                                                                                                                                                                            | 461억원                                                                                                                                                                                                                                 |
| 사용료  | 주간 : 1㎡=10원<br>야간 : 1㎡=13원<br>1 일 : 364만원                                                                                                                                         | 주간 : 1㎡당 10원<br>야간 : 1㎡당 13원<br>1 일 : 145.6만원                                                                                                                                                                                                         | 주간 : 1㎡당 10원<br>야간 : 1㎡당 13원<br>1 일 : 43만원                                                                                                                                                                                       | 주간 : 1㎡당 10원<br>야간 : 1㎡당 13원<br>1 일 : 76만원                                                                                                                                                                                            |
| 운영방식 | 직영                                                                                                                                                                                | 직영                                                                                                                                                                                                                                                    | 직영                                                                                                                                                                                                                               | 위탁관리 : 14억 7,300만원<br>(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단운영팀)                                                                                                                                                                                               |